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진 안 군
[농업정책과]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하여 외국 지자체와의 MOU 체결 및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음

I 목적·근거 법령

1. 목적

-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

【기본 운영 원칙】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전 내국인 구인 절차 필수 이행
-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 계절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어촌의 피해 예방 대책 마련
- 관내 농·어업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

2.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의3, 제29조 등

II 참여 대상 · 분야

1. 지자체

1) 내국인 구인 노력

가. 구인 주체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지자체(시·군)

나. 구인 방법

- (필수)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국인 구인 공고
- (1개 선택) 신문, 방송(TV, 라디오 등), 잡지, 생활정보지, 농·어업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 산업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등

다. 구인 내용

- 구인 기간(1주 이상)
- 모집 업종(계절근로 허용 농·어업 분야)
- 모집 인원(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 이상)
- 근로시간·임금·숙식 제공 여부 등 근로조건 세부사항 포함

라. 구인 공고 시기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전

2) 참여 고용주(농·어가, 조합·법인) 모집

- 모집 시기·대상·규모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별 자체 계획에 따름

2. 고용주(대상 · 허용 인원)

1) 대상(동일 고용주가 농·어업 분야 모두 신청 가능)

가. 농업 분야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농산물가공업체

-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농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분야로 인정된 지역의 제조업체에 한하여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 ※ 경북 상주시 꽃감 가공('22. 2. 25.)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 공공 계절근로 지역단위 운영사업자(농식품부 시범사업)

나. 어업 분야

○ 어업 운영 가구, 영어조합·법인*

- 수산물 생산, 원시·기초가공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어업, 수산물가공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인 명의의 공동어업권(면허·허가·신고)을 가지고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 수산물가공업체

-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어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분야로 인정된 지역의 제조업체에 한하여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 ※ 강원 속초시 명태(코다리) 가공('22. 2. 25.)

2)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최대 12명)

- 분야별 산정 기준에 따라 9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
- 지자체에서 정한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허용 가능

※ 지자체에서 도입 신청 시 작성, 출입국관서에 제출

- 파종기·수확기 등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 지자체가 추가 고용 필요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12명 이상 추가 고용 허용

- 고용주가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사업자인 경우 최대 100명의 범위 내에서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 배정심사협의회 또는 법무부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

- 고용주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 인원 수(상한)의 범위 내에서 계절근로자 연중 계속 고용 가능(총 고용 인원 누계와 무관)

※ 고용주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퇴직·귀국 등으로 인한 계절근로자 결원 발생 시 총원 가능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분야

【공 통 기 준】

- 농작물·수산물의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야
-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수산물가공업신고)로 작물 재배면적(농업), 허용수산물·생산 규모(어업) 확인
- 연중 상시근무 업종*, 선원**은 계절근로 허용 대상에서 제외
 - * 고용허가제(E-9) 적용 대상
 - ** 선원취업(E-10) 대상

가. 농업 분야

○ 허용 인원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농업조합·법인은 자경(공동경작)하고 있는 농지 면적 기준

※ 꽃감 가공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 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86미만	0.86~1.06미만	1.0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꽃감 가공	70점 미만	70~80점 미만	80~90점 미만	90~100점 미만	100점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복수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조합·법인은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

나. 어업 분야

허용 수산물		적용 수산물
① 해조류	육상 가공·생산	㉠ 김 건조, ㉡ 기타
	양식(해상 채취, 육상 가공) ※ '22년까지 시범운영	㉢ 전남 완도군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의 김 양식 ※ 시범운영 기간 중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 방안, 작업 규모당 적정 허용 인원 안 마련
②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 멸치 건조 ㉡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 참조기 그물 털기·선별·포장 ㉢ 명태(코다리) 가공

※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계절근로자 제도 적용 분야에서 제외

○ 허용 인원 : 어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수산물·생산 규모 확인

※ 어업경영체등록부(확인서), 어업권등본(어업허가대장 사본),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식품제조가공 영업등록)의 품목별 생산 규모 기준 등

※ 명태 가공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확인·추천을 받은 고용주에 한해 허용

허용수산물	생산 규모(단위 : 속, 톤, 박스)				
	생산규모				
①㉠ 해조류(마른김)	30만속 미만	30~50만속 미만	50~60만속 미만	60~70만속미만	70만속이상
①㉡ 해조류(기타)	5천톤 미만	5~8천톤 미만	8천~1만톤 미만	1~1.2만톤미만	1.2만톤이상
①㉢㉣ 해조류(양식)	5명 이하				
②㉠ 어패류(멸치 건조)	8만박스 미만	8~12만박스 미만	12~16만박스 미만	16~20만박스미만	20만이상
②㉡ 어패류(기타)	12톤 미만	12~20톤 미만	20~30톤 미만	30~40톤미만	40톤이상
②㉢ 어패류(명태 가공)	9명 이하				
허용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영어조합·법인은 단체의 생산 수산물, 생산 규모에 따라 배정 인원수 결정

※ 복수의 수산물을 양식·가공하는 어가·조합·법인은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

3. 계절근로자

【공 통 기 준】

- 대한민국 입국 및 사증 발급에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 대한민국 지자체의 선발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국의 농·어업 휴경기에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1) 대상자

① 대한민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으로서, 본국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며, 연령이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 단, ① 우리 정부(지자체)의 국제농업협력(ODA)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② KOICA 등 준 정부기관의 농업교육에 참여한 경우, 만 19세 이상이라도 계절근로 참여 허용(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 신청 시 입증서류 제출)

②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서, 연령이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국민과 결혼을 사유로 영주(F-5) 체류자격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 사촌의 배우자까지 허용

2) 건강상태

- 활동성 결핵 환자, 전염병 환자(코로나19 감염자 및 의심자 포함), 마약 복용자, 사증발급신청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 출산한 사람은 계절근로 참여 대상에서 제외

3) 선발요건

- (외국 지자체 주민) 본국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
-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자

III 운영 방식 결정

구 분	고용주	근무 장소
① 농·어가 직접 운영	농·어가 및 농·어업 조합·법인	농·어가, 조합·법인의 작업장
②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사업자와 파견계약을 맺은 이용자의 작업장
③ 공공 계절근로 지역단위 운영사업자	지역단위 운영사업자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맺은 이용자의 작업장

※ 위 세 가지 방식 중 선택 또는 혼합하여 운영 가능

1. 농·어가(조합·법인) 직접 운영

- 지자체에서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등의 방식으로 선발한 계절근로자를 농·어가 및 조합·법인에서 직접 고용

2.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를 통한 간접고용(농업 분야)

1) 개요

-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은 ① 광역시·기초 지자체, ② 광역시·기초 지자체의 장이 지정한 지자체 산하의 농촌인력중개센터, ③ 농협에서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농가에 파견(인력공급)

2) 파견근로사업 운영 조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를 받고, 배정심사협의회에 파견근로사업 계획서 제출

※ 배정심사협의회 이후에는 법무부에 제출한 후 운영

- 계절근로자의 급여 지급, 숙소 제공, 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무단이탈(불법체류) 등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에 귀속

3)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의 계절근로자 고용

-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로 승인받은 지자체는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 시행

※ 단,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는 인원 제한 없이 고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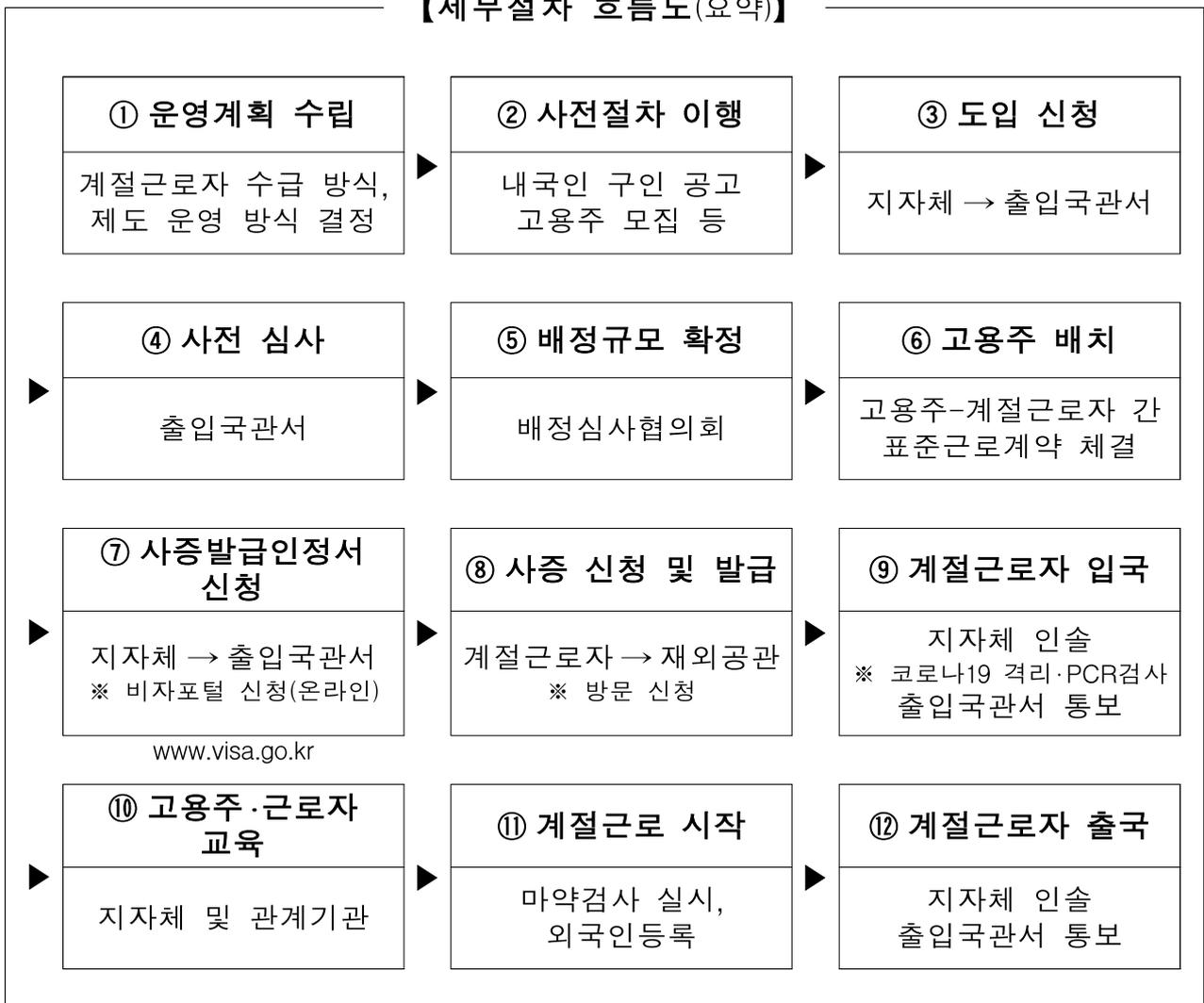
- 계절근로자를 파견(인력공급)받은 농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용료(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IV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배정

【계절근로자 도입 기본요건 및 절차】

- ①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조직을 갖춘 지자체에서 내국인 구인노력 이행(국민 일자리 보호)
- ② 지자체에서 참여 요건을 갖춘 고용주 모집
- ③ 지자체에서 ①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②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③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④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서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여 도입 신청
- ④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지자체의 도입 신청에 대해 사전 심사
- ⑤ 관계부처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최종 확정

【세부절차 흐름도(요약)】



V 계절근로자 수급

1.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 방식

- 생략 -

2.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방식

1) 추천자 :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 및 국민과의 결혼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피추천자 :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사촌의 배우자 포함)을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 지자체에 추천(신청서 제출)

※ 추천자 거주 지역과 다른 지자체에 추천하는 것도 가능. 단, 계절근로자의 선발은 모집하는 지자체의 기준 및 계획에 따름

VI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1. 계절근로자 배치 기준

1) 배치 대상 계절근로자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2) 계절근로자 배치 가능 고용주

- 본 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단계부터 참여를 신청한 고용주
- 농·어업경영체등록, 적정 숙소 구비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로부터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붙임12)'를 발급 받은 고용주

2) 고용주 배치 순위(1순위 : 기본계획 참여 고용주, 2순위 : 지자체 자체 기준)

가. 1순위 : 기본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인원을 배정받은 고용주(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사업자 포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근로계약 체결한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배치
- 기본계획에 참여한 고용주 중,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중도 출국 등 고용주의 귀책사유 없는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총 인원 수를 고용하고 있지 못한 경우

나. 2순위

- 아래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을 반영한 자체 기준에 따름

VII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발급

1. 신청(지자체)

1) 신청 시기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확정 이후 연중 상시

※ 필요 시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기간, 계절근로자 본국에서의 비자발급 소요기간, 출국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

2) 신청 방법 : 비자 포털(www.visa.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3) 사증 종류

사증(VISA)		분야	피초청자	체류기간	유효기간
단기 취업 계절 근로	C-4-1(단수)	농업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90일	3 개월
	C-4-2(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C-4-3(단수)	어업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C-4-4(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계절 근로	E-8-1(단수)	농업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5 개월	
	E-8-2(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E-8-3(단수)	어업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E-8-4(단수)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 계절근로자의 연간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횟수 제한 없음

4) 초청자, 고용주 및 피초청자

구분	대상	비고
초청자 (도입주체)	시장·군수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
고용주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	농·어가 및 농·어업영농조합·법인,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공공 계절근로 지역단위 운영사업자
피초청자 (계절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5) 제출서류

※ 비자 포털(www.visa.go.kr)에 업로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과정에서 초청자, 고용주 및 피초청자의 적격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가 일부 가감될 수 있음

가. 지자체 준비 서류(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사업자 포함)

필수	①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도입 신청 시 제출	도입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
	②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③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엑셀 파일)		
	④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		
	⑤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		
	⑥ 계절근로자 숙소점검 확인서(【붙임4】)		
	⑦ 계절근로자 코로나19 격리 및 방역 계획서		
해당 지자체 제출	○ MOU 체결 계획·결과서 ※ 체결과정, 근로자 선정, 송출 과정에서의 비용 지급 여부 등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 계획서(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첨부) ○ 지역단위 운영 사업 계획서(농식품부 선정 공문 첨부)		

나.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

- 여권 사본
-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류*

- 의료보험 가입 대상인 고용주가 고용하는 계절근로자는 제출 불요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및 지역단위 운영사업자, 농·수산물가공업체 등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외공관 사증 발급 신청 시 제출

- (MOU 체결 계절근로자) 본국에서의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

- 농·어업 종사 경력증명, 농·어업 기술자격증, 농·어업 관련 교육 이수증 또는 학위증, 자국 정부로부터 농·어업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 증빙서류 등
- 단, 외국 지자체(정부)에서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위 요건을 면제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와 협의

-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번역본 첨부)

※ 본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호적부·출생증명서 등으로 결혼이민자와 계절근로자 간의 관계가 분명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

다. 고용주 관련 서류

○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확인서(【붙임4】)

- 지자체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전에 숙소를 모두 방문하여 점검
- 계절근로자가 국내 거주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또는 지역단위 운영사업자가 고용주인 경우, 기타 필요 시 출입국관서와 합동 점검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붙임8】, 근로계약 기간 : 사증별 체류기간)

-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나 지역단위 운영사업자가 고용주일 경우,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무방식·조건 등 세부사항 명시

2. 사증발급인정서 심사·발급(출입국관서)

- 초청자, 고용주에 초청·고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함
- 피초청자가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어야 함
- 전년도 기준, MOU 체결 방식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50% 이상이 무단 이탈한 국가의 지자체와 체결한 MOU 인정 불가
- 심사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요청
-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신청의 경우 신속 심사

1) 심사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필요)

가. 초청자(지자체)

○ 도입 계획 이행 여부(도입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심사)

- ※ ①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②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③ 계절 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④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

○ 계절근로자 운영방식의 적정성(해당 지자체)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 계획서

-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첨부

- 지역단위 운영 사업 계획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대상 선정 공문 첨부

- 외국 지자체와의 MOU 체결 내용, 체결과정의 적정성
 - MOU 체결 계획·결과서
 - MOU 합의서 및 붙임 서류
 - ※ 귀국보증금 예치 관련 입증서류 등 첨부
-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자 격리 및 방역 계획서
 -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수립·제출

나. 고용주

- '제1편 제XI장 근로조건·인권보호(42p)' 준수 여부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포함 여부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 부합 여부
-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충족 여부
- 표준근로계약서의 계약 사항
- 본 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숙소 기준·요건 등 충족 여부
 - ※ 지자체에서 제출한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 확인서(【붙임4】) 참조
 - ※ 고용하려는 계절근로자가 가족·친척의 집에서 출퇴근 시 면제

다. 계절근로자(피초청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 적용

2) 발급·확인

가. 출입국관서

- 요건 충족 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 성실근로자 재입국 추천 시, 신속 심사·허가
 - ※ 52p '제1편 제XIII장 계절근로자 출국 및 성실근로자 재입국' 참조

나. 지자체

- 사증발급인정번호 계절근로자에게 통보

VIII | 사증 신청 · 발급

1. 신 청(계절근로자)

1) 신청자 : 계절근로(C-4, E-8)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은 외국인

2) 신청 장소 : 계절근로자 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3)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일 기재)
- 여권, 사진(35mm×45mm) 1매*, 수수료(사증발급편람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 건강진단서(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 결핵진단서(결핵 고위험국가* 국민만 해당)

○ 결핵 고위험국가('20. 2월 기준)

(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 팔 (ㄷ) 동티모르, (ㄹ) 라오스, 러시아, (ㄹ)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몽골, 미얀마, (ㅂ)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ㅅ) 스리랑카, (ㅇ)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ㅈ) 중국, 짐바브웨, (ㅋ)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ㅌ) 타지키스탄, 태국, (ㅍ)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대사관(영사관) 지정병원에서 발급 필요

○ 신청자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 E-8-1~4 비자 신청자에 한하여 징구

○ 사증(VISA)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일 것

○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내무기관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신청 당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서류

※ 백신접종 확인서, PCR 음성확인서 등

2. 사증 심사 · 발급(재외공관)

1) 심사 기준

가. 건강상태 확인

- 결핵, 마약 복용, 기타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코로나19 감염 또는 의심자 포함) 사증발급 불허

※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입국 외국인 요건 구비 여부 확인

나. 범죄경력 확인

※ E-8-1~4 사증 신청자만 해당

【불허 대상 범죄】

-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살인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죄, 「폭력행위처벌법」 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특정범죄가중법」 상 단체 등의 조직죄 등
- 사기·공갈·협박죄·마약 범죄
-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터뷰 등 정밀심사 후 사증발급 여부 결정

다.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추천받은 계절근로자의 사증 심사

-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 국적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계절근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한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을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려는 경우에 한함

2) 사증 발급 후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 경우

- (고용주 또는 추천자) 국내 지자체에 즉시 통보
- (국내 지자체) 즉시 출입국관서에 사증 취소 요청

※ 국내 지자체는 추천자와 해당 계절근로자에게 사증 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입국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통보 지연 등으로 해당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항공료, 계약 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최종 책임은 초청자인 대한민국 지자체에 있음)

- (출입국관서) 사증 취소(즉시)

IX

계절근로자 입국·교육 및 관리

1. 입국 前 준비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 사항】

-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대응 지침 등을 따름(방역당국의 최근 시행 지침·결정을 준수)
 - * 관계 기관별 대응 지침(www.cdc.go.kr)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내 지침
- 계절근로자 도입 전 검토 사항
 - 방역당국의 지침·기준에 따른 격리시설 마련 및 이행계획 수립
 - 도입 예정 국가·지자체의 코로나19 상황 점검
- 대한민국 행 항공기 탑승 및 입국 단계
 -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 후 단체 입국하는 계절근로자(C-4-1·3, E-8-1·3)는, 재외공관에서 지정(해당 공관 문의)한 PCR 검사방식을 채택·운영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PCR 검사서 준비·제출
 - ※ 부적격 PCR 검사서 등 제출 시, 대한민국 행 항공기 탑승 또는 입국이 불허될 수 있음
-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
 - 자체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발생·전파 방지를 위한 시설격리 및 PCR 검사 등 실시

1) 개별·단체 입국자 공통

가. 외국 지자체 : MOU에서 정한 교육 실시

- ※ 사증발급신청 방법, 대한민국 지자체 정보, 불법체류 시 불이익,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절차 등

나. 대한민국 지자체

- 고용주의 농·어업 작업 시기를 고려하여 입국 일정 수립
- 계절근로자가 검역 및 위생(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포함) 관련 반입금지 품목을 소지하고 입국하지 않도록 안내
- 고용주로부터 산재보험·일자리아정자금 신청, 계절근로자 명의의 임금통장 발급 준비

2) 단체 입국자

- 마약검사, 외국인등록 준비(E-8자격 계절근로자만 해당)

2. 입국 後 조치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 사항】

- 차량 이동 시
 - (차량탑승 전) 체온측정(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손 소독(손 세정제 등, 차량 내에도 비치), 보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준수사항 안내
 - (차량탑승) 원거리 유지 좌석 배치, 대화 금지
 - (차량 내부) 정기적인 소독 실시
- 집합 교육, 행정절차 진행 시
 - (입실 전) 체온측정(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손 소독(손 세정제 등, 장소 내에도 비치),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좌석 배치) 참석자 간 원거리 유지하여 좌석 배치
 - 집단 교육은 가능한 영상·유선 교육 또는 자료집으로 대체(권장)
- 계절근로 작업 시
 - (개인) 상시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착용, 작업자간의 불필요한 접촉 및 대화 자제,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 철저
 - 작업장 청결·소독, 컵·접시·숟가락 등 공동사용 금지, 작업장 주기적인 환기 등(작업 도구,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 계절근로자 숙소
 -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수건류 분리사용
 - 컵·접시·숟가락 등 공동사용 금지
 -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소독 실시
- 위생용품 비치 및 청결 상태 유지
 - 고용주는 보건용 마스크, 손 세정제, 체온계, 비누,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장갑 등 위생 관련 물품 작업장과 숙소에 충분하게 비치
 - 지자체는 고용주의 위생용품 비치 상태, 청결 상태, 소독 실시에 대해 수시로 점검 및 지원

1) 개별·단체 입국자 공통

-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교육

※ 교육 자료 등은 한국어와 계절근로자 본국의 언어로 제작하고, 한국어와 계절근로자의 본국 언어로 교육 실시

- 고용주와 계절근로자를 위한 행정절차 대리
 - (고용주 대리) 산재보험 신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등
 - (계절근로자 대리) 임금통장 발급 준비
- E-8-1~4 체류자격자에 대한 추가 절차 지원
 - 마약검사 실시 ※ 36p '제1편 제X장 1. 외국인등록' 참조
- 외국인등록 의무 안내
 -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단체 입국자

- 공항에서 계절근로자 인솔
- 입국 직후 입국자 현황을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

3. 고용주 · 근로자 교육

- 1) 교육기관 : 지자체(필요 시 출입국관서·관계기관 참여)
- 2) 교육 시기·대상 : 계절근로자 단체 입국 직후 근로자와 고용주 교육
 - ※ 개별 입국자에게는 단체 입국자 교육에 준하는 방식으로 교육
- 3) 교육 내용 ※ 42p '제1편 제XI장 근로조건·인권보호' 참조
 - 본 기본계획 등에 따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 애로사항 또는 긴급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
 - 인권침해 예방(성희롱 방지 교육 등 포함)
 -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등

- (출입국관서) 체류만료일, 성실근로자 재입국, 근무처변경, 여권·통장 본인 소지, 숙소기준 준수, 무단이탈(불법체류)·인권침해 발생 시 제재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근로기준법상 준수 사항 등

4) 해조류 양식업 계절근로자에 대한 해상작업·안전조치 교육

- 고용 어가 인솔 하에 최소 3인 1조 팀별 작업
- 해상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필수
- 날씨 등을 고려한 무리한 작업 금지
 - 기상특보 발표 및 강수 현황 등에 따라 해상안전사고 유의
- 비상연락망 구축
-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 숙지 및 착용 의무화
- 선박이 부두에 완전히 접안 후 안전하게 승·하선
- 파도 등에 의한 선체 동요 시 작업 중지 및 바다에 추락 방지를 위해 선박 안쪽으로 이동
- 선박 승·하선 및 선박 내 장난 금지
- 익사 예방 교육
 - 물에 빠졌을 때 머리를 물 밖으로 유지
 - 팔, 다리를 안쪽으로 움츠려서 체온을 최대한 유지
 -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방법 숙지
- 사고 발생(위험감지) 시 구조(119 등) 요청 방법 안내 등

4.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 통보

1) 지자체

- 매월 첫째 주 출입국관서에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 통보
 - ※ 엑셀 서식 /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포함

2) 출입국관서

- 지자체에서 통보한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 적절성 확인

X

외국인등록 · 근무처변경 · 무단이탈

-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계절근로자의 **근무처변경**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서의 사전 허가 필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시, 고용주는 무단이탈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지자체와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 필요**(위반 시 고용주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1. 외국인등록

※ C-4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 대상 아님

1) 대상 : E-8-1~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

2)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붙임6】), 여권, 사진(35mm×45mm) 1매, 수수료(3만 원)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7】)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징구 불요

○ 산재보험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가입증명원

※ 42p '제1편 제X장 1.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참조

○ 마약검사 확인서(【붙임10】)

※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www.hikorea.go.kr에서 확인)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마약검사 실시

3) 심사기준

○ 외국인등록 일반 요건

○ 마약검사 결과 음성 여부 확인

※ 마약검사 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한 조치는 「단순노무인력 단체입국자 마약 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4)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5개월(체류기간 연장 불가)

2. 근무처변경

【공 통 기 준】

- 고용주 : 계약 종료 해지 직후 출입국관서·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1】)제출
- 지자체 : 고용주가 제출한 고용변동신고사항을 통해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확인→매월 첫째 주 출입국관서에 통보(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시 배치 제한)
- 계절근로자 : 계약 종료 해지된 직후 또는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서 또는 지자체 방문(미방문 시 소재불명 절차에 따름)
- 출입국관서
 -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서 내용 및 지자체 통보 내용을 통해 고용주·외국인 배치 적정성 확인
 -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 종료 해지 사유 파악(필요 시)
 - ※ 실태조사 결과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확인 시→벌점 부과→법무부 보고(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TF 조사)

1) 계절근로자의 근무처변경이 가능한 경우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 해지된 경우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 해지된 경우

가. 원 고용주

○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1】) 제출

나. 지자체

○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기준’에 따라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 주선

○ 새 고용주에게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2】)’ 발급

※ 기본계획 미참여 고용주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 및 적정 숙소 구비 여부 등 계절근로 참여 요건 심사

다. 출입국관서 : 새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처변경 허가

○ 신청 방법

- 외국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서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경우 지자체에서 대리 신청(출입국관서 방문 또는 공문 발송)

○ 근로계약 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C-4 : 90일, E-8 : 5개월)

○ 제출서류

- 계절근로자

- 통합신청서(【붙임6】),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12만 원)
- 표준근로계약서(【붙임8】) 사본

- 고용주

- 산재보험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가입증명원
- 의료보험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가입증명원(해당자만 제출)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2】)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붙임7】)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징구 필요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입력

- (근무처 변경/추가 → 비고란) 모집 지자체 이름, 새 고용주의 고용 가능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 현재 고용 중인 계절근로자 수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 농·어업경영등록체 번호 입력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 【붙임12】 참고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E9 04		
접수번호	TSAA21008184	접수일자	2021.08.20
업무구분	<input type="radio"/> 근무처지정 <input checked="" type="radio"/> 근무처변경 <input type="radio"/> 근무처추가 <input type="radio"/> 기타		
담당자허가여부	Y 허가	허가여부	Y 허가
		허가번호	TSBJ21001748
*사업자등록번호	6329905522	일련번호	9999
		업체명	경애호
고용주	김성희	보수	0 선택
업체상태		업종	05113 연안 어업
*허가만료일자	2022.08.25	비고	철원군 모집, 고용주 총 고용가능 외국인 : 5명, 현재 고용하고 있는 겨

2) 계절근로자의 근무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가. 원 고용주

-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1】) 제출

나. 지자체

- 해당 고용주가 다른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2】) 발급

다. 출입국관서

-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 명령
- 해당 외국인의 계절근로 재참여를 위한 근무처변경 등 불허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입력
 - (통합외국인조회 → 참고사항란) 前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사항, 근로계약 중도 해지 사유(귀책사유 세부사항 등)

3) 외국인등록 전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합의를 통한 근무처변경

가. 원 고용주

-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붙임11】) 제출

나. 지자체

- 고용주가 다른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2】) 발급

※ 기본계획 미참여 고용주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 및 적정 숙소 구비 여부 등 계절근로 참여 요건 심사

다. 출입국관서

○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 전 근무처변경 시 수수료 면제(E-9과 동일)

- 계절근로자

- 통합신청서(【붙임6】), 여권, 사진(35mm×45mm) 1매, 수수료(3만 원)
- 표준근로계약서(【붙임8】) 사본
- 마약검사 확인서(【붙임10】)

- 고용주

- 산재보험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가입증명원
- 의료보험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가입증명원(해당자만 제출)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붙임12】)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붙임7】)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징구 필요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입력

- (근무처 변경/추가 → 비고란) 모집 지자체 이름, 새 고용주의 고용 가능 계절근로자 총인원 수, 현재 고용 중인 계절근로자 수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 농·어업경영등록체 번호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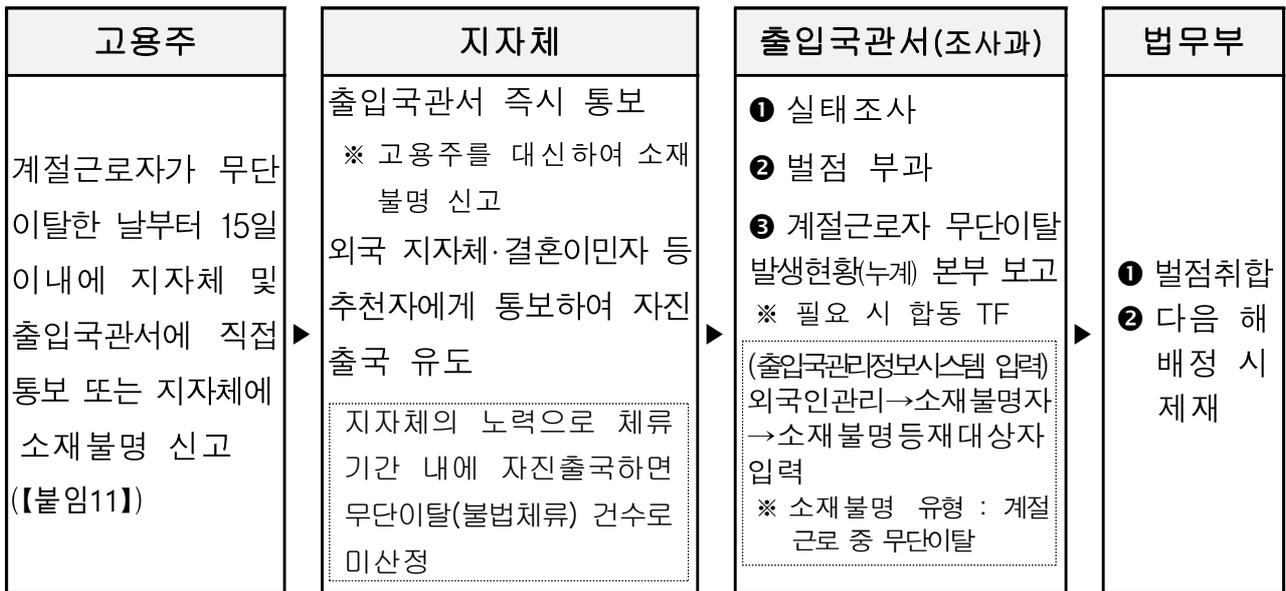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 【붙임12】 참고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E9	04	
접수번호	TSAA21008184	접수일자	2021.08.20
업무구분	<input type="radio"/> 근무처지정 <input checked="" type="radio"/> 근무처변경 <input type="radio"/> 근무처추가 <input type="radio"/> 기타		
담당자허가여부	Y 허가	허가여부	Y 허가
*사업자등록번호	6329905522	일련번호	9999
고용주	김성희	보수	0
업체상태		업종	05113 연안 어업
*허가만료일자	2022.08.25	비고	철원군 모집, 고용주 총 고용가능 외국인 : 5명, 현재 고용하고 있는 겨

3. 무단이탈(불법체류)

무단이탈 계절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비전문취업(E-9)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제Ⅳ장의 '9. 근무처 무단이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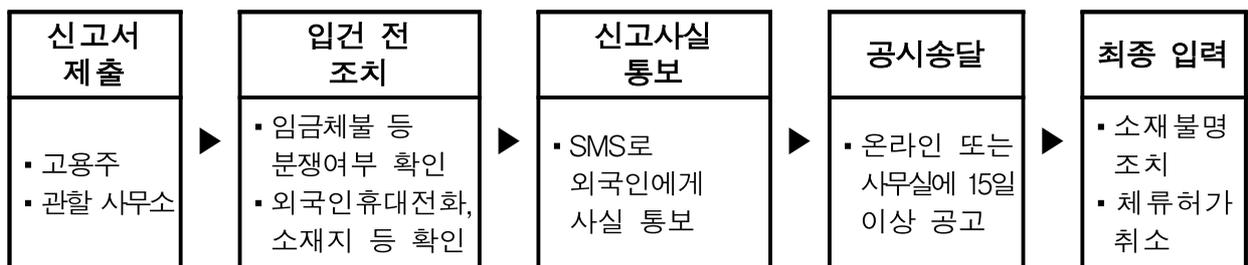
1) 무단이탈 신고·접수 절차 흐름도



2) 무단이탈 신고 접수된 계절근로자의 체류허가 취소 절차 개요

- ① 무단이탈 신고 접수
- ② 외국인 출국여부 등 확인
- ③ 해당 외국인에게 '신고 접수 사실 및 출석요구'를 SMS로 통지
- ④ 미 출석 시, 공시송달로 출석 요구 및 체류허가 변경 예정 통지
- ⑤ 체류허가 변경처분 전 고용주에게 외국인 복귀여부 등 재확인
- ⑥ 체류허가 변경처분 및 변경처분 사실 공시송달

【무단이탈 신고자 세부처리 절차】



XI 근로조건 · 인권보호

1.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1) 적정 주거 환경 제공

- 계절근로자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주거 환경 제공
- 계절근로자가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가.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 외형은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개조하여 일반 주택처럼 개선한 조립식 숙소의 경우 적합 숙소로 인정 가능(사전에 관할 출입국관서와 협의 요)

나. 필수 시설·물품 구비

-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 취사도구, 침구류
- 소화기, 화재감지기

다.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숙식비를 징수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최대 20% 초과 금지
 - ※ (해조류 양식업) 숙식비 징수액이 월 통상임금의 최대 10% 초과 금지
-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숙식비는 계절근로자로 부터 별도로 받아야 함(임금과 숙식비 별도 정산)
 - ※ 숙식비를 사전 공제할 경우 ‘숙식비 공제 동의서(【붙임9】)’ 작성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담액 등을 명시하여 계절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계절근로자에게 '숙식비 공제 동의서'(**붙임9**)를 제출받아 보관(근로계약서상 숙식 정보와 공제금액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 대비)

※ 고용주는 원본, 지자체는 사본 보관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전,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모든 숙소를 점검한 후 점검확인서(**붙임4**), 사진 포함)를 출입국관서에 제출

연번	점검사항	점검 결과	조치
1	부적합 주거시설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2	주거 종류	☞ 아파트, 주택, 회관, 지자체 숙소 등	
3	냉·난방 설비		
4	온수 샤워시설		
5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있는지 여부		
6	침구류 및 식기류		
7	화재 대비(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8	숙박비 금액 과다 여부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10	관리자 유무(지자체 단체 숙소)	☞ 코로나19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24시간 상주 공무원 배치	
11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		

2)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가입

○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 가족·친척을 고용하는 경우 포함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 5인 미만 농가(개인사업자) 기준

- 최초 가입은 가입자인 사업주가 신청
 - ※ 방문·팩스·온라인(<https://total.kcomwel.or.kr>)
-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신고 가능

보험 관계 성립

- 고용주가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성립
- 보험 관계는 고용한 마지막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근로자명부

근로자 고용신고

- 입·퇴사 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한 날 또는 고용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일용근로자 :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 개시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보험 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매년 최저임금은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에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며,

○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상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20% 가산)

○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하면 새 연도의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상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20% 가산)

※ 임금변동 시 근로계약서(【붙임8】) 재작성

4)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통화로 계절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직접 지급(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5)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야간 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한 임금 조건 명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하루 30분에서 1시간씩 시간 외 근무 시, 월별 합산시간으로 지급

6)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 계절근로자가 농·어가 또는 농·어업 조합·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농·어가,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 어업의 경우 원시가공에 한하여 근무 가능하며 해상작업 금지
- 지게차 운행, 차량을 통한 출하 등 유통·판매 작업 금지

농업조합·법인(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영어조합(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에 명시된 사업장(선적항·위판장),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수산물의 양식,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 단,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음(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 금지)

7)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 부여(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휴일근무 가능(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 금지)
- 30일 근무마다 최소 2일 이상 휴일 보장

8) 최소 근무 일수 보장(월급제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75%이상 고용 보장

C-4자격(90일 체류)	최소 68일(75%) 이상 고용 보장
E-8자격(5개월 체류)	최소 113일(75%) 이상 고용 보장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9)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도장 포함) 고용주 보관 금지

10)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금지

2. 지자체 · 출입국관서 준수사항

1) 지자체

가. 사전예방

-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간 근로계약 주선 시, 근로조건(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양측에 안내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
 - ※ 산재발생 : (고용주) 산재 발생 즉시 지자체 통보 / (지자체) 행정적 지원
 - ※ 임금체불 : 지자체 중재 후,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

- 파견근로사업자, 지역단위 운영사업자는 아래 준수사항 등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작성

나. 발생 시 조치

-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등으로 계절근로자가 피해를 본 경우, 지자체 공무원을 특별보호 담당자로 지정하고 구제 지원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활용
- 출입국관서에 신속 통보, 현황 관리

2) 출입국관서

가. 사전예방

- 자체 계획에 따라 근로조건·인권침해 취약 지역 실태조사 후, '근로조건·인권보호 취약 지역 점검 현황'을 법무부에 공문으로 보고(서식 별도 송부)

나. 발생 시 조치

※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에도 동일

- 실태조사·위반 사실 확인 → 별점 부과 → 본부 보고
- 필요 시 또는 위반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실시
- 체류기간 만료 전 기타(G-1) 체류자격변경 허가 검토
- 출입국관서·지자체 합동 실태조사(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 구성 : 법무부(주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출입국관서
- 역할 :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관리·감독과 지도 점검(애로사항 해결 노력)
 - ※ '제1편 제X장 근로조건·인권보호'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점검 시기 : 합동 TF 구성 기관이 점검 필요 제안 시(중요 위반 사항 등 발생 등)

XII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법무부는 특정 국가 및 지자체 송출 계절근로자의 대규모 무단이탈 발생 등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배정 결과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음

고용주	○ 필수 준수사항에 따른 벌점(불법체류 2명 이상 시 20점 벌점 포함)의 누계에 따라 20점 이상 시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본국 현지 선발 과정 중 문제 등 농·어가 귀책사유 없이 무단이탈(불법체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 대상 아님
국내 지자체	① 무단이탈(불법체류)*과 ② 운영실태(‘필수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기준’에 따른 벌점(관리 책임) 및 중대 위반 사항 발생 등에 따른 벌점에 따라 배정 인원 삭감 또는 배정 제외 *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사업자가 고용한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불법체류)한 경우, 지자체의 무단이탈(불법체류) 건수에 포함	
외국 지자체	○ MOU 체결 방식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10% 이상 무단이탈 발생 시, MOU 체결한 우리나라 지자체와 MOU 체결 불가 ○ MOU 체결 방식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50% 이상 무단이탈 발생 시,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 간 MOU 체결 불가	
결혼이민자	○ 추천한 가족·친척이 무단이탈한 경우, 향후 계절근로자 추천 불허 ○ 허위로 가족·친척을 추천한 경우, 계절근로자 추천 영구 불허	

※ 불법체류 : 근무장소 무단이탈 또는 체류기간 내에 미출국

불법체류율 : (이탈자 수) ÷ (입국 외국인 수) × 100%(소수점 이하 반올림)

산정 기간 : 전년도 1월부터 당해연도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일까지

1. 적발 기관별 조치

적 발 기 관	조 치 사 항
○ (출입국관서 적발) - 고용주·지자체에 벌점 부과 → 지자체에 통보 후 법무부 보고 ○ (지자체 적발) - 관할 출입국관서 통보 - (출입국관서) 고용주 벌점 부과 후 지자체에 결과 통보(지자체 벌점 면제)	○ (출입국관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 입력 후 본부 보고 ○ (지자체) - 고용주 통보 및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배정 기준’에 감점 반영
※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중대 위반 사항 적발 시 -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해당연도 및 다음 해 재배정 제한	

2. 고용주(농어가, 조합·법인, 공공 계열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사업자)

※ '필수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기준'에 따른 벌점 (누적)합계 기준 제재

파견근로사업자, 지역단위 운영사업자가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파견근로사업자, 지역단위 운영사업자에게 고용주로서의 벌점을 부과함과는 별도로 지자체에게도 관리책임에 대한 벌점 등을 부과

【필수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기준】

위반 및 개선 사항			벌점		기타
			고용주	지자체	
부적합 숙소	①	3일 이내 개선	4점	2점	
시설과 물품 미구비	②	3일 초과 개선	8점	3점	
과도한 숙식비	③	미개선	20점	4점	고용주 재배정
산재보험 미가입	④	3일 이내 가입	9점	1점	보험가입까지
	⑤	3일 초과 가입	14점	2점	근로 금지
	⑥	미가입	20점	3점	고용주 재배정
최저임금법 위반	⑦	개선	4점	1점	
	⑧	미개선	20점	2점	고용주 재배정
임금 월 1회 지급	⑨	개선	4점		
임금 통화지급	⑩	미개선	14점	2점	고용주 재배정
임금체불	⑪	임금체불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각종 수당 미지급	⑫	개선	4점		
	⑬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근로시간 미준수	⑭	개선	4점		
	⑮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휴게, 휴일 미보장	⑯	개선	4점		
	⑰	미개선	20점		고용주 재배정
최소 근무일 미보장	⑱	-	20점	2점	
근무처 이동 제한	⑲		20점	2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권, 통장 등 보관	⑳		20점	1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상변동 미신고	㉑		20점	2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체자 누적수	1명	㉒	10점		
	2명	㉓	20점		
	3명	㉔	25점		
	4명 이상	㉕	30점		
인권침해 등	㉖	-	40점 이내	5점 이내	사안별 결정 (허위 자진신고 또는 금품수수 40점 부과)
기타 지시 불이행	㉗	-	20점 이내	5점 이내	사안별 결정

제재 불법체류+준수사항 위반	위반일로부터 다음 연도까지 배정 제한	위반일로부터 다음 2개 연도까지 배정 제한	위반일로부터 다음 3개 연도까지 배정 제한
누적된 벌점 합계 (전년도부터 기산)	20~29점	30~39점	40점 이상

3. 지자체(공공 계열근로 파견사업자 등 포함)

※ 불법체류, 운영실태 기준 모두 적용

1) 불법체류(무단이탈) 기준

전년도 입국인원수	전년도 불법체류자 수 또는 불법체류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1~10명	-	1명	-	2명	-	-
11~20명	1명	-	2명	-	3명	-	4명이상
21~3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	6명이상
31~4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7명	8명이상
41~50명	1명	2명	3~4명	5~6명	7~8명	9~10명	11명이상
51명 이상	2%	3~4%	5~8%	9~12%	13~16%	17~19%	20%이상
제 재 (신청 인원 대비)	삭감 없음	5% 삭감	10% 삭감	20% 삭감	30% 삭감	50% 삭감	1년 선정제외

※ 외국 지자체나 결혼이민자 등 추천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지자체에서 계절 근로자가 자진출국 하도록 노력하여 체류기간 내에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건수로 미산정

- ① ('20. 1월) 100명 신청 : 전년 불체율 잠정 5%(10명 삭감대상)→우선, 10%를 삭감하여 90명만 배정
('20. 6월) 200명 추가 신청 : 전년도 전체 불체율이 9%로 확정(40명 삭감대상)
40명 삭감 +1월에 20명을 삭감했어야 했는데 10명을 삭감하지 않았으므로,
1월 신청 건을 불체율 9%로 다시 산정→1월에 삭감하지 않은 10명을 소급하여 삭감
⇒ (200명 - 40명 - 10명) 150명 확정
- ② ('20. 1월) 100명 신청 : 전년 불체율 잠정 5%(10명 삭감대상)→10%를 삭감하여 90명만 배정
(하반기 미신청) '21년 신청 시 '20년에 삭감하지 않은 10명 삭감

2) 운영실태 기준

- ❶ '필수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기준'에 따른 벌점(관리 책임)과
- ❷ 중대 위반 사항 발생 등에 따른 벌점에 따라, 배정 인원 삭감 또는 배정 제외

운영실태	제재	신청인원의 5% 삭감	신청인원의 10% 삭감	신청인원의 15% 삭감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1년 배정 제한 (벌점과 무관)
누적된 벌점 합계 (전년도부터 기산)		15~19점	20~29점	30점 이상	

4. MOU 체결 외국 지자체 · 결혼이민자

1) 외국 지자체

- MOU 체결 방식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10% 이상이 무단이탈한 외국 지자체는 다음 해 같은 대한민국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추천 불허
- MOU 체결 방식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50% 이상이 무단이탈한 국가의 모든 지자체와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 간 MOU 체결 불허

2)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가 추천한 계절근로자(가족·친척)가 불법체류하는 경우 무단이탈한 날부터 계절근로자 추천 불허
 - ※ 먼저 입국한 가족·친척이 불법체류 중인 경우, 지자체는 미입국 가족·친척에 대한 배정을 취소
- 허위로 계절근로자로 추천 시 계절근로자 추천 영구 불허

5. 계절근로자

- 본인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체류허가 취소 및 근무처 변경 불허
 - ※ 37p '제1편 제 X 장 2. 근무처변경' 참조

XIII | 계절근로자 출국 및 성실근로자 재입국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추천

1) 추천 요건

- 고용주가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의 재입국을 추천하는 경우, 지자체는 추천을 받은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사증발급 인정서를 다시 신청

C-4 체류자격	최소 68일(75%)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E-8 체류자격	최소 113일(75%)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G-1-19 체류자격	계절근로 참여 후 정상 출국 시

- 성실근로자 재입국은 동일한 고용주가 동일한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재입국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

2) 성실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사증 신청

가. 고용주

-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붙임13】)’를 지자체에 제출

나. 지자체

-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확인서(【붙임14】)’ 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다. 출입국관서

-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확인서만 징구

라. 재외공관

- 계절근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한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려는 경우, 건강진단서, 결핵진단서 및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성실근로자 재입국 시, 입국 유예기간 및 연간 사증 발급 횟수 제한 없음

2. 계절근로자 출국(지자체)

- 출입국관서에 출국 일정 사전 고지, 계절근로자 출국수속 지원

제2편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도입을 신청(연중 상시)한 이후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가능

I 목적·근거 법령

1. 목적

- 농·어촌에서 연중 상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국내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상시화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

【기본 운영 원칙】

-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려는 지자체의 도입 신청(사전)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전 내국인 구인 절차 필수 이행
-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갖춘 고용주와 외국인의 근로계약 주선
 - ※ (고용주) 농·어업경영체등록 및 적정 숙소 마련 등 참여 요건 충족
 -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한 합법체류자
- 관내 농·어업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

2.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의3, 제29조 등

II 참여 대상

1. 외국인(계절근로자)

【공 통 기 준】

-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
- 지자체에 의해 계절근로자로 선발된 이후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필요
 - ※ 근로계약 체결 전, 반드시 지자체의 확인 필요
- 그 밖에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절근로 참여 불가

- 1) 문화예술(D-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2)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 ※ 한국어연수(D-4-1), 단기유학(D-2-8)자격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 계절근로 참여 가능
- 3)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4)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 가사보조인·외교관의 비동거 가족(F-1-2) 제외
- 5)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6)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동포 중 비취업 서약을 한 사람
 - ※ '20. 12월부터 방문취업(H-2) 동포가 체류기간 만료 전에 비취업 서약을 하면 계속 자녀 양육, 학업 등을 위해 국내 체류 허용
- 7) 현지 정세 불안으로 인한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또는 아프간인
- 8) '19. 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가능 국내체류 외국인 확인 방법(지자체)】

1) 문화예술(D-1)	외국인등록증 확인
2) 유학(D-2), 어학연수(D-4)	
3) 구직(D-10)	
4) 방문동거(F-1)	
5) 동반(F-3)	
6) 비취업 서약한 방문취업(H-2)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7) 특별체류 허가 조치에 따른 기타(G-1) 체류자격 소지 미얀마인 및 아프간인	
8)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1) 사증 소지자	여권 → 사증면 → 대한민국 입국사증(VISA) → 비고란 확인 ('선순환 자진출국 입국자' 표시)

※ 참여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유선으로 문의

2. 고용주

1) 대상

※ '제1편 제II장 2. 고용주(대상·허용 인원)'과 동일

2) 허용인원

※ '제1편 제II장 2. 고용주(대상·허용 인원)'과 동일

2) 계절근로자 배치(1순위 : 기본계획 참여 고용주, 2순위 : 지자체 자체 기준)

※ '제1편 제II장 2. 고용주(대상·허용 인원)', 24p '제VI장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참조

4) 고용 기간(근로계약 기간) : 1회 최소 1주일부터 최장 5개월까지

※ 1회 최장 5개월까지 고용 가능하며, 요건을 갖춘 계절근로자와 계속하여 근로계약 연장 가능

5)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배치 절차

※ '제2편 제 V 장 계절근로자 배치 및 계절근로 재참여' 참조